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의 명칭 및 소속 변경 등〉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1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의 명칭 및 소속 변경 등 (안 제5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병기의원 등 166인

나. 발 의 일 : 2025. 9. 16.

다. 회 부 일 : 2025. 9.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통계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의 명칭 및 소속 변경 등 (안 제5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

현 행	개 정 안
○ <u>국가통계위원회</u> -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u>를 둔 - 심의·의결사항 ·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u>(신 설)</u> ·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 ·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기준 · 행정자료의 활용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 등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u>1명</u> 포함 <u>30명</u> 이내의 위원 · 위원장: <u>기획재정부장관</u>	○ <u>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u> -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u>를 둔 - 심의·의결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통계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u> · (이하 현행과 같음)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u>2명</u> 포함 <u>35명</u> 이내의 위원 · 위원장: <u>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u>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 소속기관인 통계청이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¹⁾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데이터처는 정부조직 개편사항 및 국가데이터처의 기능 강화를 반영하고, 공동위원장 도입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지난 10월 1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통계청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확대 개편되고, 소관 사무로 통계·데이터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무가 추가되었음.

1) 「통계법」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부처명	통계청	국가데이터처
소 속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
소관사무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데이터의 총괄·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통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변경하고, 소속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며,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 변경사항]

명 칭	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
소 속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 공동
위원수	30명 이내	35명 이내
심의· 의결사항	·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기준 등	·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기준 등 · (추가)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

한편,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으로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하고 있음.

현행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교육부장관·통계청장 등 13개 관계부처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 등 당연직 위원 17명과 통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현행 국가통계위원회 위원 구성]

위원	정수	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 포함 30명 이내
	당연직 (17명)	○ 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성평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통계청장 ○ 한국은행총재·한국개발연구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경제 관련 단체장(중소기업중앙회장)
	위촉직	○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 · 통계 또는 관련 분야 단체에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상기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024년말 기준으로 총 436개 통계작성기관이 1,358종에 달하는 국가 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재정·경제·건설교통·에너지·보건복지·환경·노동·농림수산·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가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 정수 확대를 통해 관계 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승인통계 현황]

(단위: 개)

구분		작성기관 수	작성통계 수
정부기관	중앙행정기관	1	66
	통계청 외	49	400
	지방자치단체	260	676
	소계	310	1,142
통계작성 지정기관	금융기관	7	23
	공사/공단	36	67
	연구기관	32	49
	협회/조합	26	32
	기타	25	45
	소계	126	216
계		436	1,358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부문별 국가승인통계 현황]

부문	통계 수	부문	통계 수
소득·소비·자산	8	농림/수산	60
경제일반·경기/기업경영	48	인구	11
광업·제조업	17	사회일반	26
건설/교통·물류	46	범죄·안전	32
도소매·서비스	21	환경	38
임금/물가	20	보건	64
국민계정	23	복지	29
정부·재정	21	교육·훈련/문화·여가	42
금융/무역·국제수지	35	노동	36
에너지	17	정보통신/과학·기술	58
주거/국토이용	27	계	679

* 지역통계(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제외(2007년 116건, 2024년 660건)

자료: 통계청 제출자료

또한, 공동위원장 도입으로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²⁾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취지는 민관 공동위원장을 도입하려는 것이나, 공동위원장을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취지와 달리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게 됨.

따라서, 국무총리 외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³⁾을 법률로 일부 상향하고,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

2) 2024년 6월말 기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행정위원회 10개, 자문위원회 48개로 총 58개임.

3) 「통계법」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①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통계청장

2. 한국은행총재,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 관련 단체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 및 같은 법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

3. 통계 또는 관련 분야(위원회 심의와 관련 있는 경제·사회·정책 등의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다. 통계 또는 관련 분야와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자

라. 그 밖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위원장을 지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개정안	수정안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된다.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 ③ -----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통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개정안 제4항과 같음)

인정되는 자

[민관 공동위원장을 규정한 입법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가통계위원회) 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2. (생략) <신설> 3. ~ 8.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u>1명</u>을 포함한 <u>3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기획재정부 장관이</u> 위원장이 된다. ④ (생략)	제5조의2(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 ① ----- ----- <u>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u>-----. ② -----. 1. 2. (현행과 같음) 3. 통계와 「<u>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및 「<u>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 9.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③ ----- <u>2명</u>을 포함한 <u>35명</u> ----- <u>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u> -----. ④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51